

#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0. 13) 상정

○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0. 13)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 재 형)

가. 제안이유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용역비 또는 사업비)을 높여 형식적 심의를 배제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이행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3조)

가.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이상에서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나. 공사·사업집행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다. 연구·학술·기타용역과제는 1천만원이상에서 학술용역비 2천만원이상인 사업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학술용역중 2천만원 이하가 되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가?</p> <p>○ 용역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p> <p>○ 학술용역발주 대상 사업의 기준은?</p>	<p>○ 지금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었음.</p> <p>○ 용역발주 금액이 낮게 규정되면 용역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의 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음.</p> <p>○ 정책수립에 대한 기본계획, 기준 지표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용역 등이 있음.</p>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용역심의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자칫 훼손할 우려도 있는바, 기준금액 이하 용역발주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제도장치가 요구됨.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7호
의결 년월일	2004. 10. 22 (제115회)

제출년월일 : 2004. 10. 5.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용역비 또는 사업비)을 높여 형식적 심의를 배제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이행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3조)
  - 가.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이상에서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 나. 공사·사업집행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 다. 연구·학술·기타용역과제는 1천만원이상에서 학술용역비 2천만원이상인 사업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
3.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이상인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u>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u></p> <p>2. <u>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u></p> <p>3. <u>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이상</u></p>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 -----</p> <p>1. <u>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u></p> <p>2. <u>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u></p> <p>3. <u>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이상인 사업</u></p>